# 스데반회 회칙

#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중앙교회 스데반회라 칭한다.(이하 '본회'라 칭한다.) 제2조(위치)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중앙교회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- 1. 본회는 교회의 성장 발전과 회원 각자의 신앙 향상을 위하여 충성된 봉사자로서 맡겨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.
- 2. 회원 및 성도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눔에 있다.

#### 제 2 장 회 원

제4조(자격) 본회의 회원은 본교회 안수집사로한다.

제5조(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

- 1. 당회의 결의에 의한 교회의 각종 행사 참여 및 봉사의 의무
- 2.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
- 3. 회비납부의 의무
- 4. 복음전도의 의무

제6조(권리) 본회 회원은 회원으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.

### 제 3 장 조 직

제7조(임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회장, 직전회장, 부회장, 회계, 서기, 총무, 부총무

제8조(임원의 의무) 본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회 장: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
- 2. 직전회장: 회장을 협조하며 임원의 일원으로 봉사한다.
- 3. 부 회 장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.
- 4. 회 계: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재정에 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.
- 5. 서 기: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각종 회의 사항을 기록, 보존하며 문서를 처리하고, 대내외 통신연락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6. 총 무: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사업을 통괄하고 임원회의 결의를 실행하며,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원한다.
- 7. 부 총 무: 회장을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임무를 대리한다.

제9조(사업) 제1장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1. 교회 연합과 일치
- 2. 구제와 전도와 봉사
- 3. 회원 상호간 친목 및 영성훈련

#### 제 4 장 선 거

제10조(자격) 본회의 임원은 본교회에 등록된 안수집사이어야 한다.

제11조(선출)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1. 정·부회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출석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하며, 투표참여 회원 과반수 이상 최고 득점자를 회장,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.(단,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합의추천으로 추대할 수도 있다.)
- 2. 회계, 서기, 정·부총무는 신임 회장단에서 결정한다.

제12조(임기)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1회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보선) 본회의 임원이 궐위되었을 시에는 회장은 임시총회에서, 그 외의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여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 5 장 회 의

제14조(집회) 본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.

- 1. 정기총회
- 가. 결산총회: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, 결산보고, 사업경과보고 등을 심의 결정, 임원개선 등의 안건을 다루며, 총회 1주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나. 예산총회: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총회 1주일 전에 소집공고하여야 하고,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보고하고 심의 결정한다.
- 2. 임시총회
- 가, 임원회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, 7일 전에 부의안건 및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나, 재적 회원 2/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1주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3. 임 원 회: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- 4. 조찬기도회(월례회) :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6시에 모인다.(탄력적 운영)

제15조(개회) 모든 회원의 개회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.

제16조(의결) 모든 회의의 의결은 다수결 원칙으로 한다.

## 제 6 장 재 정

제17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월회비, 특별회비, 찬조금, 기타수입 등으로 관리한다.

제18조(회비)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.

제19조(지출) 모든 금전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회계가 지출한다.

#### 제 7 장 경 조

제20조 본 회의 경조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에 한한다.

제21조 본 회의 경조비 지출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상황에 따라서 임원회의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.

## 제 8 장 부 칙

제22조(회칙개정)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23조(준용규례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거나 미비한 사항은 본회의 성격이나 목적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의 결의. 교회 법도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례에 준한다.

제24조(기금 적립) 본회의 은퇴자 선물은 뱃지로 하며 매년 일정 금액의 기금을 적립한다.

## 제25조(효력)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: 2014년 12월 6일 (2014년도 정기총회) 개정: 2016년 12월 4일 (2016년도 정기총회) 개정: 2018년 1월 14일 (2018년도 정기총회)